

설립상담 안내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대표번호
1800.2012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2 033-749-3920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웅빌딩)	055-266-7970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으로 541,5층	053-956-5001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1-517-0266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주안동, 계림빌딩)	032-446-9492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전문건설공제조합)	061-282-9588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아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협동조합 설립절차



신청서류

- 1 설립신고서 1부
- 2 정관 사본 1부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5 임원 명부 1부
- 6 사업계획서 1부
- 7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신청서류

- 1 설립 인가 신청서 1부
- 2 정관 사본 1부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5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 6 사업계획서 1부
- 7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본 1부(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협동조합 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협동조합 종류를 알아봐요



협동조합 특징을 알아봐요



협동조합 함께해요



협동조합이 궁금해요



자발적 결성 · 공동 소유 · 민주적 운영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

-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 기존 복지체계에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
-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민주적 운영(1인1표)으로 조합원 만족감 제고 및 주인의식 향상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사업목적	조합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방식	유한책임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 · 도지사 신고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또는 우선출자 발행 협동조합인 경우만 의무)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 3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감독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적용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도성격	인가제(법인격 부여)	인증제(자격 부여)
소관부처	주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인성격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포함
이윤	배당불가	배당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01 설립지원

- 1 **상담지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현장 밀착형 협동조합
종합지원체계 구축
- 2 **창업지원**
내실 있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02 운영지원

- 1 **교육**
인재 육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콘텐츠 제공
- 2 **경영공시**
협동조합의 합목적적인 운영 지원 및 신뢰성 있는 경영공시
정보 제공
- 3 **전문상시상담**
분야별 전문가 상담으로 설립 · 운영상의 애로사항 해소와
운영내실화 도모

03 판로지원

- 1 **공공판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시장 진입 지원
- 2 **민간판로**
협동조합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 유통채널 진입지원 및
협동조합간 거래 확대 지원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Q.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A.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조례로 시 · 도지사가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 신고해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은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A.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
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주사업 유형 선택은 협동조합 설립목적 및 주사업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사업의 종류 및 서비스 제공대상을 기준으로 주사업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③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 · 의료 ·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⑤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④ 위탁사업형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Q.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